

인권헌장

2024. 06



광성기업(주)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따른 임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실사 가이드라인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1.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계열사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원칙

1)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2)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3)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5)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6)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7)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이주근로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및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9)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10)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령】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